

청주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2가단523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6. 17.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충북 보은군 D 대 172㎡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E과 피고 사이에 2017. 3. 12.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E에게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7. 6. 16. 접수 제60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51959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9. “E은 원고에게 33,890,547원 및 그 중 8,667,866원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 E의 부(父) F은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7. 3.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 피고와 자녀 6인(E 포함)이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 공동상속인들은 망인 사망 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7. 6. 16. 접수 제6082호로 피고 명의로 ‘2017. 3.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은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천안시 동남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원고의 E에 대한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으로 보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이에 살피건대, E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상속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자신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은 당시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

피고는, E이 1997년부터 플라스틱원료 도소매업을 경영하다가 2003. 3월 경영난으로 부도가 났고, 그때부터 모인 피고가 E에게 월 100여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었으며, E은 2008년 백체트라는 희귀병을 판명받고 현재까지도 직장생활을 못하고 생활비를 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남편 F이 사망한 2017년 당시 피고가 그동안 E에게 생활비 등으로 보낸 돈을 생각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살피건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경위가 피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당시 E의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E과 피고 사이에 2017. 3. 12. 체결된 이 사건 토지 중 E의 2/15지분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E에게 위 2/15 지분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